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2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려움이라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

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등(안 제2조)

개정안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u>따른 자동차</u>	가. ----- ----- <u>따른 자동차</u>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u>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u>수소전기자동차</u>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2. ----- ----- ----- ----- <u>수소전기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u> ----- ----- ----- -----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 동차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3. ~ 10. (생략)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	--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이동 편의성 및 기동성으로 배달용 등으로의 수요가 증가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는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²⁾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로드맵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대수는 ('19) 11,993대 → ('20) 14,005대 → ('21) 18,128대 → ('22) 15,917대 → (('23) 8,765대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던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대수 증가폭이 최근 2년간 다소 축소되었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전기이륜자동차가 각종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내연이륜자동차에서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³⁾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⁴⁾에 따른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⁵⁾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제2조제1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 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삭제<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 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 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⁶⁾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만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정의 조항에 직접적으로 이륜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하여 그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동법 제11조의2제4항⁷⁾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게 되는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가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는 점⁸⁾을 감안하면 해당 구역에서의 주차 허용은 불필요해 보이므로 제11조의2제4항 제1호의 전기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2호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하여 명시하고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8)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기이륜차는 220V 혹은 배터리교체식으로 충전하며 기존 완속·급속 충전을 통한 충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충전시설의 주차구역에 전기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있는데,

현행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나열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⁹⁾에서 각각 그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각 호를 추가하여 그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전기이륜차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¹⁰⁾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행규칙 등의 개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시행
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6

-
-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
한다.